



구의회소식

www.gbc.seoul.kr

구민과 함께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강북구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2010년도 시무식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는 1월4일(월)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행사를 갖고 2010년도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안광석 강북구의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전년도 강북구의회의 모든 성과를 동료의원들에게 돌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존재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강북구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2010년도에도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동료의원들과 구민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2010년도에도 구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더욱 새롭게 변화하며 발전해 가는 강북구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힘찬 의정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강북구의회는 지난 2009년 12월 18일 15시 본회의장에서 연말을 맞아 평소 봉사정신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42명을 선발하여 의장표창을 전달하였습니다.
표창 대상은 강북구 관내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분 또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분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훈훈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여 온 주민들을 눈여겨보고, 매년 연말이면 이들에게 표창과 감사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 왔습니다.

구의회의 기능을 안내해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강북구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을 갖습니다. 현재 제5대 강북구의회는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구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지역 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 권리와 의무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 의사의 참여, 청원의 소개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의에 출석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 청렴, 이권불개입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임 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의장과 부의장

강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회의장내

질서유지권, 의회의 사무감독권을 가지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 의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지방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강북구의회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됩니다.

강북구의회는 업무소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 심사하는 예비적인 심사권을 가집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재임기간과 같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인원과 운영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 회의의 공개 및 방청

강북구의회는 열린 의회 지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본회의장을 강북구민에게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권은 일반 방청, 단체 방청, 장기 방청권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직원에게 교부합니다.

일반인이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단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관신청] 강북구의회는 구민여러분의 참관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901-4510~1), 팩스(901-45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청신청] 강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회의장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청권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